

신기술·신제품인 건축설비 기술적 기준의 []인정 []유효기간 연장 신청서

• 어두운 난(■)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실명 확인	처리기간
신기술·신제품 건축설비의 명칭			
신기술·신제품 건축설비의 개발자	상호 또는 법인명	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
	성명(대표자)	전화번호	이메일
	주소		
신기술·신제품 건축설비의 내용·기능 ※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는 별지로 작성			
신기술·신제품 건축설비의 적용 범위			
유효기간	[] 신규	[] 연장	
	인정일부터 5년 이내	기존 유효기간(. . . ~ . . .)	

「건축법」 제6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신기술·신제품인 건축설비 기술적 기준에 대한 인정(유효기간 연장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- 신기술·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구체적인 내용·기능과 해당 건축설비의 신규성·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에 관한 내용을 적은 서류 - 신기술·신제품인 건축설비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증서·서류 등의 사본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33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기술 지정증서 「특허법」 제86조에 따라 발급받은 특허증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」 제18조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기술 인증서, 같은 영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 및 같은 영 제18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18조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제품 인증서 -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증서·서류 등 「산업표준화법」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인정을 신청하는 신기술·신제품인 건축설비와 관련된 부분 - 국제표준화기구(ISO)에서 정한 내용 중 인정을 신청하는 신기술·신제품인 건축설비와 관련된 부분 - 그 밖에 신기술·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 인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※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·증서 등은 해당 증서·서류 등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.
------	--